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응할 수 있는가?*

홍 지 호

【국문요약】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결과논변은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최훈 교수는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대응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왜 동의하지 않는지 보이려고 한다. 결과논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의 전제들 중 적어도 하나를 부정할 수 있거나 결과논변의 타당성을 보증해 주는 베타규칙을 부정할 수 있거나 결과논변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가 결정론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 나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이것들 중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주요어】 결과논변, 무법칙적 일원론, 데이빗슨, 자유의지, 자율성, 결정론

접수일자: 2015.09.05 심사 및 수정완료일: 2015.10.12 게재확정일: 2015.10.12

*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지적과 도움말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심사위원들의 지적 사항들을 이 논문에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 지적 사항들은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최훈 교수께 감사드린다.

1. 도입

자유와 결정론의 문제에 관한 데이빗슨(Davidson)의 입장은 양립가능론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페일스(Fales)는 ‘데이빗슨식의 양립가능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자유와 결정론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¹⁾ 또한 글래넨(Glannon)은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anomalous monism)이 피셔(Fischer)가 제안하는 반양립가능론(semicompatibilism)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 나는 이렇게 데이빗슨을 양립가능론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도 데이빗슨 자신이 양립가능론을 의도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³⁾ 그러나 나는 ‘자유(또는 할 수 있음)에 대한 조건적 분석’에 대한 데이빗슨의 입장과 무법칙적 일원론을 검토함으로써 그의 양립가능론적 입장은 성공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⁴⁾ 그 주장의 핵심적인 근거 중 하나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양립불가론을 지지하는 반 인웨건(van Inwagen)의 결과논변(consequence argument)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최훈 교수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데이빗슨의 양립가능론적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⁵⁾ 나는 이 글을 통해 결과논변의 예봉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즉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1) Fales(1984) 참조.

2) Glannon(1997) 참조. 여기서 피셔의 반양립가능론이란 결정론이 참일 경우 대안적 가능성은 없지만 그럼에도 도덕적 책임의 필요조건 역할을 할 정도의 자유는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이론이다. 반양립가능론에 대해서는 Fischer(1994), Fischer(2002b) 참조.

3) Davidson(1973) 및 Davidson(1970) 참조.

4) 홍지호(2005) 참조.

5) 최훈(2014) 참조.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최훈 교수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 주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방식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결과논변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2장). 이는 결과논변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명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는 결과논변에 대한 네 가지 대응방법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것이 결과논변에 대한 대응방법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3장). 이 검토는 주로 최훈 교수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진행될 것이다. 이를 통해 최훈 교수가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장에서 논의하게 되는 대응방법 중 두 가지 것과 무법칙적 일원론이 관련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미리 말하자면, 그 중 하나는 결과논변의 결정론 전제를 부정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결과논변의 건전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논변이 행위의 자유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다. 앞으로 논의하겠지만, 전자의 방법은 결과논변에 대한 좋은 대응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후자의 방법에 초점을 맞춰 논의할 것이고, 무법칙적 일원론이 그 방법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4장). 이러한 검토에 근거한 결론적 주장은,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없다는 것이다.

2. 결과논변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

일 수 있는지 따져 보기 위해서는, 결정론이 자유를 위협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결과논변은 결정론이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이라면, 바로 그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한다. 이제 논의를 위해 결정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자.⁶⁾

$$\square[(P\&L)\rightarrow F]$$

여기서 \square 는 논리적 필연성 기호이고, F는 행위자의 정신사건이나 행위를 포함하는 현재의 사건들에 대한 명제이고 P는 F가 기술하는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세계 상태에 대한 명제들이며 L은 자연법칙들의 연접을 의미하는 명제이다. 이러한 결정론이 행위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것이 행위의 대안적 가능성을 앗아간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해진 어떤 행위에 대해 대안적 가능성이 성립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행위와는 다른 대안적 행위가 행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시각 t1에 영화관에 간 행위가 자유로운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시각에 영화관에 가지 않는 다른 행위를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참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결정론이 참일 경우에는 그러한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은 성립할 수 없어 보인다. 결정론이 참일 경우, 모든 행위는 과거 사건에 관한 명제와 자연법

6) 대략적으로 결정론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원인과 자연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을 표현한 명제인 $\square[(P\&L)\rightarrow F]$ 는 자유의지와 결정론 문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고, 특히 이 글에서 논의하게 되는 결과논변을 구성하는 전제이다. van Inwagen(1983), Warfield(1999) 참조.

칙의 연접에 의해 함축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결과논변이라 불리는 다음의 논변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계속해 보자.⁷⁾

<결과논변>

P1. $\square[(P\&L)\rightarrow F]$

P2. $N(P\&L)$

C. NF

이 논변의 P1은 결정론 전제이다. 두 번째 전제 P2와 결론 C에 있는 $N(x)$ 는 어느 누구도 x 를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 달리 말해 어느 누구도 x 가 참이라는 데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P2가 의미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과거사건에 관한 명제와 자연법칙에 관한 명제를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P2는 법칙 및 과거사건 고정성 전제라고 불린다. 우리는 P1과 P2로부터 결론 C가 도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논변의 전제들이 모두 참일 경우, 어느 누구도 현재 발생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이미 행한 행위 외의 다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논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정론이 참일 경우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결정론과 행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행위의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인정

7) 이러한 형태의 결과논변은 원래 반 인웨건(van Inwagen)이 제시한 것과 다소 다르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워필드(Warfield)가 제안한 형태를 사용한다. van Inwagen(1983) pp. 94-95 및 Warfield(1999) pp. 97-98 참조.

하고, 결과논변을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결정론과 행위의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결과논변은 행위의 자유와 결정론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논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논변이 보여주는 결정론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먼저 고려해 볼만한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응방법1. 결과논변의 건전성 부정하기

이 대응방법은 결과논변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논변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려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결정론 전제인 P1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결과논변의 건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을 통해 양립가능론을 옹호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법을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정론을 부정하는 것은, 결정론과 행위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법칙 및 과거사건 고정성 전제인 P2를 부정하는 것이다. 만일 P2를 부정할 수 있다면, 결정론 전제 P1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대안적 가능성 부재를 의미하는 결론 NF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 그러나 법칙의 고정성이나 과거사건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법칙적 일원론이 그러한 고정성 전제를 부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P1과 P2가 참이라 할지라도 NF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즉 결과논변의 타당성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사실 결과논변의 타당성은 베타규칙(β -rule)이라 불리는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다.

<베타규칙>

P1. $\Box(X \rightarrow Y)$

P2. NX

C. NY

이 규칙의 타당성과 관련된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⁸⁾ 예를 들어, X를 ‘영화관에 가려는 욕구를 가짐’이라고 하고 Y를 ‘영화관에 가는 행위를 함’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P1은 영화관에 가려는 욕구를 가진다면 영화관에 가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P2는 영화관에 가려는 욕구를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즉, P1의 전건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P1과 P2를 참으로 받아들인다면, 영화관에 가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거짓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 C는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듯이 보인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이러한 베타규칙의 타당성을 부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논변에 대한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8)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있을지 평가하는 데에 베타규칙의 타당성과 관련된 논의는 필요가 없다. 무법칙적 일원론에서는 베타규칙을 부정하는 요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규칙을 둘러싼 논쟁에 관해서는 van Inwagen(1983) pp. 96-105, McKay and Johnson(1996), “A Reconsideration of an Argument against Compatibilism,” *Philosophical Topics* Vol.24, No.2와 E. Carlson(2000), “Counterexamples to Principle Beta,”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Vol. LXI, No.1 등을 참고하라.

대응방법1-1. 결정론 전제 부정

대응방법1-2. 과거 및 법칙고정성 전제 부정

대응방법1-3. 베타규칙 부정

이러한 방법들과 달리, 결과논변이 건전하다고 할지라도 양립가능론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다. 즉, 결정론이 참이어서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여전히 행위의 자유는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는 것이다. 이 시도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자유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프랭크퍼트식 (frankfurt-style) 사례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사례를 잠시 살펴보자.⁹⁾

존스가 고어에게 투표할지 부시에게 투표할지 숙고하면서 기표소 안에 있다고 해보자. 숙고 후에, 그는 고어에게 투표하기로 선택하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표함으로써 고어에게 투표한다. [그런데] 그는 몰랐지만, 민주당 지지자인 진보적 신경외과의사 블랙이 존스의 두뇌 활동을 감시하는 장치를 존스의 두뇌에 설치해 놓았다. 만일 그가 민주당 지명자[고어]에게 투표하기로 선택하려 한다면, 그 장치는 단지 감시만을 계속하고 [존스의 선택과정]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존스가 공화당 지명자[부시]에게 투표하기로 선택하려 한다면, 그 장치는 개입하여 존스가 민주당 지명자에게 투표하기로 선택하게 하는 데 충분한 전기적 자극을 존스의 두뇌에 가한다.

이 사례의 주인공 존스의 행위 즉 민주당 지명자인 고어에게 투표

9) 이런 식의 사례는 원래 프랭크퍼트(Frankfurt)가 대안적 가능성의 부재와 도덕적 책임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Frankfurt(1969) 참조. 여기서는 Fischer(2002a)와 Fischer(2002b)에 제시된 형태를 따랐다.

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스로의 숙고와 선택에 의해 고어에게 투표하고 블랙의 장치는 그러한 숙고나 선택에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존스의 행위에는 대안적 가능성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 존스가 부시에게 투표하려 한다면, 블랙의 장치가 존스의 두뇌에 전기적 자극을 가하여 그가 고어에게 투표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어에게 투표할 때 존스에게는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은 없지만 존스는 자유로운 행위를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존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가지는 듯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행위의 자유는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율적 숙고와 선택에 따라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행위의 자유는 성립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예상하겠지만, 이 사례가 적절한 것일 경우 결과논변이 가진 힘은 약해질 수 있다. 이 사례는 결과논변의 결론 즉 NF와 행위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결정론이 F에 포함될 수 있는 행위에 대안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함축한다고 해도 그 행위가 정상적인 사유과정을 통해 산출되어 자율적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행위는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제 결과논변에 대한 이러한 대응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대응방법2.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 부재와 행위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이러한 대응방법을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결과논변이 가진

힘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있을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그것이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 부재와 행위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뒷받침해주는 이론일 수 있을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3. 결과논변에 대한 대응이론으로서의 무법칙적 일원론

무법칙적 일원론은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대응방법들 중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 관련이 있기는 한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할 필요가 있다.¹⁰⁾ 데이빗슨에 따르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따로 떼어 쓰려 놓고 보면 모두 참인 듯이 보이지만 이 모두를 참이라고 간주할 경우 모순이 발생하는 듯이 보이는 다음과 같은 세 원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 (1) 적어도 어떤 정신적 사건들은 물리적 사건들과 인과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인과적 상호작용의 원리)
- (2) 인과성이 있으면 법칙이 있음에 틀림없다. 즉 원인과 결과로 관련되는 사건들은 엄밀한 결정론적 법칙에 포섭된다. (인과성의 법칙적 성격의 원리)
- (3) 정신적 사건들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엄밀한 결정론적 법칙은 없다.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의 원리)

여기서 정신적인 것의 무법칙성은 정신적 사건들은 법칙에 포섭되

¹⁰⁾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해서는 Davidson(1970)의 내용을 따랐고, 그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홍지호(2005)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겼다는 것을 밝혀둔다.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최훈(2004), 최훈(2014)을 참고하라.

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데이빗슨이 자율성의 필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과 (2)의 연접은 (3)의 부정을 함축하는 듯이 보인다.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 사실로 인정하고 인과관계가 법칙성을 함축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정신적 사건들도 법칙성을 함축한다고 추론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 원리를 조화시킬 수 있는 길은 바로 무법칙적 일원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a)정신적 사건은 법칙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과 ‘(b)모든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결합한 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a)를 통해 일단 (3)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a)가 의미하는 것은 정신적 사건을 포섭할 수 있는 심물법칙이나 심리법칙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정신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인과관계가 함축하는 법칙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b)에 의해 설명된다. (b)가 참이라면, 즉 모든 정신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이라면, 원리상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으로 재기술될 수 있다. 이렇게 물리적 사건으로 재기술된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법칙에 포섭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과성이나 동일성은 사건들의 관계지만, 법칙성은 사건 기술들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다.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기술되느냐에 따라 법칙에 포섭될 수도 있고 법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즉 정신적 용어로 기술된 사건은 법칙에 포섭될 수 없지만, 그 사건이 물리적 용어로 재기술되면 법칙에 포섭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법칙적 일원론은 (1), (2), (3)을 조화시킨다.

이제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해 대응하는 측면이 있는지, 그러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대응방법과 관련이 있는지 검토해 볼 차례이다. 분명한 것은, 무법칙적 일원론에는 자연법

칙이나 과거사건의 고정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다. 모든 사건은 물리적 용어로 기술될 수 있고, 그 중 어떤 사건은 정신적 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주장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사건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거나 자연법칙을 거짓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도출되지 않는다. 과거의 특정 시점에 발생한 두뇌의 사건 e 를 P 라는 물리적 기술구로 표현했다가 나중에 그 사건을 M 이라는 정신적 기술구로 다시 표현했다고 해서, P 로 표현된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P 와 관련된 자연법칙이 거짓이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을 <대응방법1-2>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대응방법1-3>과 관련되어 있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타규칙이란 $\Box(X \rightarrow Y)$ 와 NX 로부터 NY 를 도출하는 규칙이다. 그런데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정신적 사건은 법칙에 포섭되지 않는다. 즉, 정신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Box(X \rightarrow Y)$ 와 같은 법칙적인 명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타규칙은 정신적 사건에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고, 결국 정신적 사건의 무법칙성을 포함하고 있는 무법칙적 일원론에 결과논변은 적용되지 않는 듯이 보인다. 베타규칙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결과논변도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 사건이 법칙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이라 할지라도 베타규칙의 타당성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베타규칙이란 $\Box(X \rightarrow Y)$ 와 NX 가 참일 경우 NY 가 거짓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말하는 조건부 규칙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신적 사건과 관련해서 $\Box(X \rightarrow Y)$ 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법칙적 일원론의 주장이 베타규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자. 이렇게 볼 때, 무법칙적 일원론을 <대응방법1-3>과 관련된, 즉 베타규칙을 부정하는, 이론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쯤에서 최훈의 논의를 살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은 결과논변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결과논변이 무법칙적 일원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다.¹¹⁾

[*]

(1)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2)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화관에 갈 것이고, 우리는 만약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화관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3) 내가 영화관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이 논변의 (1)에는 과거 고정성 전제가 포함되어 있고, (2)에는 결정론 전제 및 법칙 고정성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훈은 이 논변의 타당성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그도 무법칙적 일원론이 베타규칙을 부정하는 이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2)이다. 즉,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화관에 갈 것이다’라는 (2)의 왼쪽 연언지는 결정론적 법칙의 사례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그 연언지가 정신적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는 데 있다.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물리적 용어로 기술된 사건들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다. 결국 최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¹²⁾

논변[*]에서 문제가 되는 전제는 두 번째 전제이다. ... “만약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화관에 갈 것

11) 최훈(2014) p. 247. 여기서 번호 표기 (1) ~ (3)은 원문에는 없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첨가하였다.

12) 최훈(2014) p. 248

이라는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개별적 사건을 법칙화한 것인데 정신적인 기술에 의한 그런 법칙화가 엄격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논변 [*]의 두 번째 전제가 거짓이므로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내가 영화관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 결국 결과논변은 무법칙적 일원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밑줄은 필자의 강조)

최훈의 지적대로, 논변 [*]의 (2)의 왼쪽 연언지는 정신적 용어로 기술되어 있다. 그는 이 점에 주목하면서 오른쪽 연언지 즉 ‘만약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화관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라는 것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왼쪽 연언지가 엄밀한 결정론적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연언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결과논변 사례인 [*]의 (2)가 거짓이기 때문에 (3)은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훈의 주장인 셈이다. 결과논변에 대한 이러한 대응방법은 앞서 우리가 간단히 언급했던 <대응방법1-1>을 연상케 한다. 정신적 사건 기술과 관련해서는 결정론적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런 대응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결정론과 자유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는 입장에서 결정론 전제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 입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무법칙적 일원론에 대한 이러한 최훈의 해석을 단순하게 <대응방법1-1>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그에 따르면,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의 결정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결정론 자체에 대한 부정은 무법칙적 일원론을 가지고 데이빗슨이 의도한 바도 아니다.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물리적 용어로 기술된 사건 즉 물리적 사건들 사이에는 결정론이

성립한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다음의 주장을 살펴보자.¹³⁾

“... 무법칙적 일원론에서는 정신적 사건을 정신적 용어로 기술할 수도 있고 물리적 용어로 재기술할 수도 있다. 정신적 용어로 기술하면 결과논변의 결정론 전제가 거짓이 되므로 결과논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물리적 용어로 재기술해서 도출되는 결론은 자유 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은 필자의 강조)

이 인용문의 ‘물리적 용어로 재기술해서 도출되는 결론은 자유 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자면, 결과논변이 물리적 용어로 이루어진 사건 기술구를 포함할 경우 결과논변은 자유의지나 행위의 자유를 훼손하는 논변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결정론 전제가 성립하여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할지라도, 무법칙적 일원론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의지 또는 행위의 자유는 여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해 결과논변에 대응하는 방법을 최훈의 주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변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무법칙적 일원론의 대응방법>

- P1. 정신적 사건을 정신적 용어로 기술하거나 물리적 용어로 기술한다.
- P2. 정신적 사건을 정신적 용어로 기술하면 결과논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 P3.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용어로 기술하면 결과논변은 자유의지 문제와 무관한 것이다.
- C. 결과논변은 성립하지 않거나 자유의지 문제와 무관하다.

¹³⁾ 최훈(2014) p. 248

앞서 언급했듯이, 이 논변에서 P2는 <대응방법1-1>에 해당한다. 정신적 사건을 정신적 용어로 기술하면 결정론 전제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결과논변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P3는 어떨까? 그것은 <대응방법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과논변의 건전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행위의 자유나 자유의지를 부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결국 무법칙적 일원론을 결과논변에 대한 대응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최훈의 주장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이러한 두 가지 대응방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결과논변의 결정론 전제를 부정하면서 결과논변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적절하지 않다.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고찰해 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P3라고 할 수 있다.

4. 무법칙적 일원론의 대응은 성공적인가?

지금까지의 논의가 적절하다면, 무법칙적 일원론을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방금 정리해 본 <무법칙적 일원론의 대응방법>의 P3의 적절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P3.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용어로 기술하면 결과논변은 자유의지 문제와 무관한 것이다.

일단 이러한 P3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훈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시작해 보자.¹⁴⁾

¹⁴⁾ 최훈(2014) p. 250

... 이때의[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의] 결정론은 물리적 용어로 기술된 사건들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다. 정신적인 사건인 자유 의지는 거기에 포섭되지 않는다. 따라서 ... “인과적 결정론에 대한 믿음이 참일 경우 정신의 자율성을 비롯한 우리의 자유에 대한 믿음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결과 논변이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최훈은 정신적 사건을 물리적 용어로 기술할 경우에는 결과논변이 건전한 논변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물리적 용어로 기술된 사건들로 구성된 결과논변의 결론은 자유의지나 행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옳다면, 물리적 용어로 기술된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결과논변은 자유의지 문제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결과논변을 물리적 사건 기술구로 구성할 경우에도 결과논변은 자유의지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따져보기 위해, 어떤 행위자가 행한 특정 행위(예를 들어, 철수가 영화관으로 가는 행위)에 대한 물리적 기술구를 A라고 하고, 그것을 야기하는 데 기여한 일련의 과거 사건들에 대한 두 기술구를 M과 P라고 해보자. 이 때 M에는 믿음이나 욕구 등의 정신적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P에는 오직 두뇌의 신경생리학적 사건 등에 대한 물리적 용어들만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M과 P는 동일한 사건과정에 대한 기술구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건 기술구들을 이용하여 두 개의 결과논변을 구성해 볼 수 있다.

<논변1>

P1. $\square[(M\&L)\rightarrow A]$

P2. N(M&L)

C. NA

<논변2>

P1. $\Box[(P\&L)\rightarrow A]$

P2. $N(P\&L)$

C. NA

이 논변들에서 L은 물론 결정론적 법칙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논변1>은 건전하지 않다. 결정론 전제인 P1에 정신적 사건 기술구 M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P1은 거짓이어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neg\Box[(M\&L)\rightarrow A]$

결국 <논변1>을 통해서 NA 즉 철수가 영화관으로 가는 행위에 대한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법칙적 일원론의 대응방법>의 P2의 근거이다.

이에 더하여, 최훈은 <논변2>의 전제들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들은 오직 물리적 사건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도출된 NA는 자유의지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논변2>가 건전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념해 보자. 무법칙적 일원론은 물리적 용어로 이루어진 기술구에 대해서는 결정론적 법칙이 성립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고, 과거사건이나 자연법칙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무법칙적 일원론은 베타규칙 자체를 부정하는 이론도 아니다. 따라서 <논변2>에서는 NA 즉 철수가 영화관으로 가는 행동에는 대한적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논변2>의 NA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결국 결정론이 참일 경우 철수가 영화관으로 가는 행위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논변2>의 전제들에 물리적 사건 기술구만 포함되어 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논변2>가 자유의지 문제와 무관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오히려 <논변2>는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자유의지나 자유로운 행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무법칙적 일원론이 <논변2>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있을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논변2>의 NA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A는 자유로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을 무법칙적 일원론이 열어주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길을 열어줄 경우에만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있을 것이다. 최훈에 따르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그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¹⁵⁾

자유의지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이빗슨]은 정신적 사건을 정신적인 용어로 기술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를 해명한다. 그것은 엄격한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최훈은 <논변2>의 NA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사건의 무법칙성에 기대어 \neg NA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¹⁶⁾ 먼저 지적해야 할 것

15) 최훈(2014) p. 253.

16) 이 논문의 심사위원 중의 한 분은 무법칙적 일원론이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는 나의 해석이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한 데이빗슨의 의도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물론 데이빗슨은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자유의 필요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과 관련된 데이빗슨의 작업은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Davidson(1974)에서 ‘자유 또는 할 수 있음’에 대한 조건적 분석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는 거기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그 행위자가 적절한 욕구와 믿음을 가질 경우 x를 행했을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위자는 x에 있어 자유롭지 않다. 그가 그 욕구나 믿음을 가질 수 없었

은, 무법칙적 일원론은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상 어떤 사건이 여러 방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거나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가능성의 존재를 보증해주지 못한다. 물론 정신적 사건의 무법칙성은 앞서 살펴본 <논변1>을 반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논변1>을 반박한다고 해서 곧바로 $\neg NA$ 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변1>에 대한 반박이 <논변2>의 결론을 약화시키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어쨌든 <논변1>을 통해서는 NA가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법칙적 일원론의 입장에서 <논변2>를 건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 <논변2>를 건전한 것으로 인정한다면, <논변2>에 여타의 전제, 예를 들어 <논변1>의 전제 P1에 대한 부정 즉 $\neg \Box[(M\&L)\rightarrow A]$ 을 포함시킨다고 해도 결론은 그대로 도출된다. 다음 논변을 살펴보자.

<논변3>

P1. $\Box[(P\&L)\rightarrow A]$

P2. $\neg \Box[(M\&L)\rightarrow A]$

P3. N(P&L)

C. NA

다면 말이다. ... 나는 이러한 견해를 거부한다. 나는 어떤 행위에 필요한 것이 (여타의 현재 상황들에 더하여) 적절한 태도와 믿음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x를 행하는 데 자유롭다(x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기본적인 것이라 주장한다.”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데이빗슨의 견해이다. 나는 이러한 데이빗슨의 견해가 적절한 것이기 위해서는 정신적 사건의 자율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믿음이나 욕구, 그리고 그것을 통한 숙고의 과정이 결정론적 법칙에 포섭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자율성을 귀속시킬 수 없다면, 그러한 과정에 의한 행위를 자유로운 것으로 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과 관련된 데이빗슨의 작업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홍지호(2005) 참조.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른다고 해도 이 논변은 건전한 논변일 수밖에 없다. 결국 <논변2>가 건전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건 A의 대안적 가능성을 보증하는 데 정신적 사건의 무법칙성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논변3>의 P2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적 사건 M은 A의 대안적 가능성을 열어주지 못한다. 결국 무법칙적 일원론은 <논변2>의 NA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정신적 사건의 무법칙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사건에 대안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이론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결과논변의 예봉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곧바로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 성급한 것이다. 왜냐하면,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앞서 살펴보았던 프랭크퍼트식 사례를 떠올려 보자. 그 사례는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자유로운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제시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그 사례 속의 주인공인 존스의 행위를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의 행위가 그 자신의 정상적인 사유과정으로 통해 산출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해 확보한 정신적 사건의 자율성이 행위의 자유를 위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의 예봉을 피해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무법칙적 일원론의 입장에서 <논변2>의 NA를 받아들여도 양립가능론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은 A가 자율적인 정신적 사건과정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고, 따라서 A가 자유로운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사실 최훈도 정신적 사건의 자율성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¹⁷⁾

[데이빗슨]이 정신적 사건이 무법칙성을 띠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작위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과거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 어떤 사건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그 사건은 정신적인 기술 차원에서 법칙에 포섭되지 않고 그래서 법칙에 의해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이것이 그에게서 정신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방식이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확보하는 정신적 사건의 자율성에 기대어 행위의 자유를 해명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학자는 비단 최훈만이 아니다. 글래넨의 주장도 살펴보자.¹⁸⁾

물리적 기술구들과 법칙적 설명들은 합리적 행위자들이 행위에 대한 심리적 기술구들과 설명들에 특징적인 욕구, 믿음, 이유, 그리고 의도를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론적 세계에서 우리의 동기적 상태와 행위가 자율적이게 될 충분한 여지가 있다.

최훈이나 글래넨은 정신적 사건은 법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에 기대어 행위의 자유를 해명하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정신적 용어로 기술된 사건들은 법칙에 따라 설명될 수도 없고 예측될 수도 없다는 의미의 자율성에 호소하면서, <논변2>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A를 자유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생각이 적절한 것이라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

17) 최훈(2014) pp. 251-252.

18) Glannon(1997) p. 224.

을 다시 거론하면서 A가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프랭크퍼트식 사례가 보여주듯이, 어떤 행위에 대한적 가능성이 있는지의 문제와 그 행위가 자율적인 것인지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법칙적 일원론이 확보한 정신적 사건의 자율성이 행위의 자유를 위해 충분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이제 우리의 물음은 이렇다. 무법칙적 일원론이 확보한 정신적 사건의 자율성은 행위의 자유를 위해 충분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기는 힘들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정신적 용어로 기술된 사건이 엄밀한 결정론적 법칙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건 자체가 결정론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 e에 대한 정신적 사건 기술구 M과 물리적 사건 기술구 P가 있다고 할 때, M을 통해서는 e의 발생 여부를 법칙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지만 P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고 한다면, e는 법칙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무법칙적 일원론에 따르면 법칙성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 기술구들의 관계이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건 e의 자율성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식적/기술적 차원이라는 것이다.¹⁹⁾ 그러한 자율성이 행위의 자유를 보장해 준다고 보기는 힘들다. 어떠한 정신적 사건이나 행위를 그 자체로는 법칙적으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고 해도 사실상 그것을 재기술할 경우에는 결정론에 포섭된다.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유로운 존

19) 난니니(Nannini)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데이빗슨의 해법에서] 실재는 결정론적이고 인간의 자유는 현상이다. 만일 정신적 사건들이 물리적 사건들이고 모든 물리적 사건들이 물리적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면, 모든 개개의 정신적 사건은 물리적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 그것이 정신적 용어로 기술되는 한, 그러한 결정이 밝혀질 수 없고 그 사건이 예측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Nannini(1999), p. 110.

재로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최훈은 무법칙적 일원론을 통해 확보한 자율성 즉 인식적/기술적 차원의 자율성이 행위의 자유를 위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²⁰⁾

[데이빗슨]의 자율성이 기술적/인식적 차원의 것이거나 심리적인 이유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데이빗슨]이 결정론이 "자유를 꺾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혼동들을 제거"했다고 거론한 철학자들 중 흄은 자유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자유 의지가 있다고, 결정론과 자유 의지가 양립 가능하다고 해명한다. 나의 행동에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박이나 위협이 없는 상태라면 자유 의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 자유의지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데이빗슨]은 정신적 사건을 정신적인 용어로 기술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다' 또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다'를 해명한다. 그것은 엄격한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데이빗슨]이 해명하는 방식이 심리적인 설명일 수도 있겠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밑줄은 필자의 강조)

앞서 확인했듯이, 무법칙적 일원론은 대안적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이론이 아니다. 특정 사건이 다른 것으로 기술가능하다고 해서 달리 행할 있음 또는 대안적 가능성 조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무법칙적 일원론이 대안적 가능성을 해명했다는 데 근거하여 인식적/기술적 차원의 자율성을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대한 생각이 오류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다. 우리는 스스로를 결단의 주체로 경험하지만 그러한 경험은 환상일 수 있다. 인식적/기술적 차원에서 확보한 자유는 그만큼 약한 것이다. 물론 자유에 대한 인식은 자유의 필요조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인식적/기술적 차원의 자유만을 확보한 무법칙적 일원론은 그러한 인식이

20) 최훈(2014), p. 253.

참이라는 것을 보이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법칙적 일원론이 프랭크퍼트식 사례와 어울리는 이론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법칙적 일원론의 자율성이 행위의 자유를 해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프랭크퍼트식 사례와 무법칙적 일원론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전자에는 결정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후자에는 결정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프랭크퍼트식 사례를 생각해 보자. 언뜻 보기에, 이 사례의 주인공 존스와 결정론적 세계의 행위자는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엑스트롬(Ekstrom)은 결정론이 참일 경우에는 자율성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²¹⁾

만일 그것이[인과적 결정론이] 참이라면, 과거 사건들은 자연법칙들과 더불어서 존스가 실제로 행한 그 특정한 결단을 행함에 있어 충분하다. 완전한 예언자는 즉, [존스와] 관련된 과거 사실들과 자연법칙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는 존스가 무엇을 결단할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가능한 선택지들에 관한 존스의 주관적 지각은 적절치 않다. 사실상 그 과거는 그를 하나의 특정한 결단 상태로 밀어붙인다. 그 상태는 그 과거와 자연법칙을 놓고 볼 때, 그 시각에 물리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상태이다. 그래서 양립불가론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결정론이 참일 경우 사실상 존스는 [그 특수한 상태로] 밀어붙여진다는 것이다. ... 사실상 양립불가론에 따르면, 결정론이 참일 경우 결정론의 그 ‘밀어붙이는 특성(the pushing feature)’ 때문에 존스는 자신의 결단과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는 안 된다. (밀줄은 필자의 강조)

이러한 엑스트롬의 견해에 따르면, 결정론이 참일 경우 행위자의 선택이나 행위는 과거 사건과 자연법칙에 의해 하나의 특정한 상태로 밀어붙여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안적

21) Ekstrom(1998), pp. 284-285.

가능성 측면의 문제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프랭크퍼트의 사례의 주인공 존스에게는 대안적 선택의 가능성이 없긴 했지만, 존스의 그 선택이 밀어붙여진 것으로 보긴 힘들었다. 그러나 결정론을 가정할 경우에는 대안적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존스의 선택은 밀어붙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엑스트롬의 주장인 것이다. 결정론이 참일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행위자의 정신적 사건이나 행위는 행위자가 태어나기 전의 먼 과거의 사건들 즉 행위자 외부의 사건들에 의해 밀어붙여진 결과물로 간주될 수 있을 법하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나 행위가 이렇게 밀어붙여진 것이라면, 그것들은 자율적인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스스로의 숙고 과정을 통해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지각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론이 참일 경우 대안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자율성도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할 수 있다.²²⁾ 무법칙적 일원론이 확보한 정신적 사건의 자율성은 결정론의 이러한 밀어붙이는 힘을 저지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인식적/기술적 차원의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즉, 인식적/기술적 차원의 자율성을 가지고는 행위의 궁극적 원천이 나라는 것을 보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데이빗슨의 무법칙적 일원론이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있을지 검토해 보았다. 검토 결과,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방법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

22) 이러한 결정론의 ‘밀어붙임의 특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홍지호(2007) 참조.

의 건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의지나 행위의 자유가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결정론이 참일 경우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방식으로 행위의 자유를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말하자면, 다른 방식으로 대안적 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유의미하게 주장할 수 있거나 결정론이 참일 경우에도 행위의 자유에 충분한 정도의 자율성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가 적절하다면, 무법칙적 일원론은 그럴 수 없다. 따라서 무법칙적 일원론은 결과논변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론일 수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참고문헌

- 최훈(2004), “데이비드슨의 무법칙적 일원론과 백도형의 심신유명론”, 『철학적 분석』 10, pp. 79-111.
- 최훈(2014), “무법칙적 일원론은 자유 의지를 살릴 수 있는가?”, 『범한철학』 73, pp. 233-255.
- 홍지호(2005), “‘결과논변’과 무법칙적 일원론”, 『철학적 분석』 11, pp. 33-60.
- 홍지호(2007), “프랭크퍼트식 사례는 양립가능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철학연구』 77, pp. 21-42.
- Davidson, D. (1970), “Mental Event,”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207-227.
- Davidson, D. (1973), “Freedom to Act,” D. Davidson,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pp. 63-81.
- Ekstrom, L. (1998), “Protecting Incompatibilist Freedom,”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35, pp. 281-291.
- Fales, E. (1984), “Davidson’s Compatibilis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5 (2), pp. 227-246.
- Fischer, J. M. (1994), *The Metaphysics of Free Will: A Study of Control*, Oxford: Blackwell.
- Fischer, J. M. (2002a), “Frankfurt-Style Compatibilism,” S. Buss and L. Overton, ed., *Contours of Agency*, MIT Press, 2002, pp. 1-26.
- Fischer, J. M. (2002b), “Frankfurt-Type Examples and Semi-Compatibilism,” R. Kane, ed., *The Oxford Handbook of Free Will*,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281-308.
- Frankfurt, H. (1969), “Alternate Possibilities and Moral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66, pp. 829-839.

- Glannon, W. (1997), "Semicompatibilism and Anomalous Monism,"
Philosophical Papers 26 (3), pp. 211-231.
- Nannini, S. (1999), "Physicalism and the Anomalism of the
Mental," M. De Caro, ed., *Interpretations and Causes*,
Kluwer, 1999, pp. 101-124.
- van Inwagen, P. (1983), *An Essays on Free Will*, Clarendon.
- Warfield, T. A. (1999), "Donald Davidson's Freedom," M. De
Caro, ed., *Interpretations and Causes*, Kluwer, 1999, pp.
95-100.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University College Sungkyunkwan University

jihohong@skku.edu

Can anomalous monism be interpreted as a counter theory
against the consequence argument?

Jiho Hong

As is well known, the consequence argument(shortly, CA) is intended as showing the incompatibility of free will and determinism. Recently, professor Choi Hoon tries to show there is a way in which Davidson's anomalous monism(shortly, AM) can be interpreted to counter CA. But I do not agree with his interpretation. So, in this paper, I will try to show why in the following way. In order to counter CA, it must be possible for AM to deny at least one of the premises of CA or to deny β rule which guarantees the validity of CA or to show that free will is compatible with determinism in spite of the soundness of CA. In this paper, I will show that AM can do neither.

Key Words: Consequence Argument, Anomalous Monism, Davidson, Free Will, Autonomy, Determinism